//hyu.wiki/%EC%A7%81%EC%9B%90/%EC%B2%AD%EA%B0%80

직원/청가

직원복무규정에 따라 직원 본인의 경조사에 의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의 규정을 준하여 청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 청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해야 한다.

- 결혼 : 본인 5일 / 자녀 1일
- 출산 : 배우자 5일
- 입양 : 본인 20일
- 사망 :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/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 3일 /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/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

히스토리

- 2019. 8. 사망시 일수가 일부 조정됨